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4516]

사건명 :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 원고

부산시 사하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 종결 : 2017. 8. 10.

판결 선고 : 2017. 9. 21.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직무상 질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부산 ○○ ○○대로 2×2 소재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 한다)에 채용된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12. ○○수산이 소유하는 어선인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6. 7. 9. 20:20경 ○○도 주변 ○○4-○ 수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실려 있는 어획물인 생선을 크레인으로 이용하여 다른 운반선에 하역하는 도중 크레인 작동 레버를 잡은 채 실신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으며, 2016. 8. 17.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4.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재해로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선박 근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누 56134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19○○년생 남자인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은 소음이 심하고 기관의 열기로 인하여 실내온도가 실외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는 여름철로 다른 계절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기관장 업무 외에도 조업에 동원되거나 어획물 하역 작업 등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선박에 동승한 선원 ○○○는 작업 당시 날씨가 매우 더웠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선박에서의 작업 내용과 근무환경으로 원고는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스트레스성 인자가 중요한 소인 인자로 작용하였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성 인자는 이 사건 선박 내 업무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혈압 수치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2007년, 2012년 2015년 검진 당시 고혈압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사 ○○○는 혈압 상승 역시 이 사건 상병에 중요한 소인 인자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혈압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고혈압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진일	혈압 수치(mmHg)
2007. 11. 30.	1×0/90
2008. 4. 26	1×9/89
2009. 4. 20	1×0/80
2010. 5. 13	1×0/80
2011. 4. 22	1×0/80
2012. 4. 20	1×0/90
2013. 5. 20	1×0/80
2014. 4. 25	1×0/80
2015. 2. 12	1×0/93

라) 원고는 1980년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직전인 2015. 5.경까지 약 35년간 기관장 업무를 하는 동안 뇌질환을 겪은 바 없었고, 2016. 5.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